

Ⅳ. 경력신고자료[이의·경정] 신청 안내

◆ 신고서류

1. 신고자료(이의·경정)신청서 (고시 별지 제5호서식)
2. 학력, 자격, 근무경력 등을 이의·경정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
3. 서약서
4. 신분증 사본

※ 이의·경정 해당사항

1. 정부, 법원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(해당자에 한함)
2. 오기, 착오, 오입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
3.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증빙자료 및 사실확인에 의하여 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5. 본인의 삭제 요청에 의한 삭제 경력은 재신고 할 수 없음

◆ 접수방법

1. 접수장소 : 중앙회 회원관리팀
2. 접수방법
 - 방문접수 : 본인 및 대리인(신분증 지참)이 방문하여 접수
 - 우편접수 :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
3. 처리절차
 - 일반경정 : 변경 인정 신청 처리절차와 동일
 - 심의경정 : 사실조회 및 경력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정정